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후환경부로 개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6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회의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장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로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항 및 제6항, 제26조제1항제14호,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 을 둔다.	제19조(부총리) ① ----- ----- ----- <u>3명</u>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u>교육부장관</u> 이 각각 겸임한다.	③ ----- <u>교육부장관 및 기후환경부장관</u> 이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⑥ <u>기후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u>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제26조(행정각부)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기후환경부

15. ~ 1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환경부) ① -----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최근 세계기상기구(WMO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구 지표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5°C 높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온도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C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음.²⁾³⁾

1)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 이준이, “기후 위기 대응, 제22대 국회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국회사무처, 국회보, 2024.7. p.12.
중앙일보,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웠다…세계기상기구의 충격적 숫자들”, 2024.3.19.

3) 이는 인위적 지구온난화 경향에 자연변동성이 결합된 결과로, 현재 지구온난화 수준은 1.2°C로 평가됨. 지구온난화 1.2°C는 이미 매우 심각한 온도 상승 수준으로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해양에 흡수된 인위적 열 에너지는 인류가 한 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1천 배에 달함.
(이준이, “기후 위기 대응, 제22대 국회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국회사무처, 국회보, 2024.7. p.12.)

국내 기후도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강수일수 감소 등 기후변화 경향이 뚜렷한데,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1912~1940년)에 비해 1.6℃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장마 또는 가뭄이 길어지고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⁴⁾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⁵⁾하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임⁶⁾⁷⁾하는 등

4)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3.4.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국무조정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후위기 대응 예산 조정 및 기후대응기금 운영 등 재정 전략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각 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분야별 대응을 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조직 및 기능·기구·인력 현황]

역할		기관명	업무내용(기능)	기구·인력
심의·조정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탄소중립 이행 주요정책 심의·의결	4국 1관 9과 1담당관 6팀 약 68명*
총괄	총괄·조정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원회 사무처장 겸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조정	
	계획·점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배출권 거래제, 친환경차 보급 등	
	재정 전략	기재부	기후변화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후대응기금 운영, 기후위기 대응예산 조정	
분야별 대응		과기부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	1과 7명
		행안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예측, 기후재난 대책	2과 10명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신재생 에너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1과 12명
		산업부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제품 생산	3과 18명
		복지부	기후변화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1과 2명

②~④ (생략)

7) 국무조정실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원회 사무처장 겸임

	국토부	건설·건축·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2과 5명
	해수부	해운·항만·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1과 6명
	중기부	중소기업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1과 4명
	산림청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국외산림사업	3과 18명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정보 생산·관리	1국 4과 58명

※자료: 행정안전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참고

*주-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조직도 기준

개정안은 현행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환경부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상향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의 명칭 또한 ‘기후’환경부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임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2023년이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온도가 높았던 해로 기록된 가운데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주요 온실가스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는 등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⁸⁾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⁹⁾¹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온실

8) 중앙일보,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웠다…세계기상기구의 충격적 숫자들”, 2024.3.19.

해럴드경제, “2023년, 역대 가장 더웠다… 세계기상기구(WMO), 이상 기후 경고”, 2024.3.19.

경향신문, “빠르면 올해 지구기온 상승폭 1.5도 넘는다…5년 안에 사상 최악 더위 찾아올 가능성 86%”, 2024.6.5. 참고

9)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이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환경부¹¹⁾에서 총괄·조정 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2022.3.25.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종전의 법률과 비교하면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도입(저탄소¹²⁾→탄소중립¹³⁾)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순배출

10) 국무조정실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기후탄소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의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조정 및 폐기물 분야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46. (생략)
- ④ 삭제 <2020. 8. 25.>
- ⑤ 삭제 <2020. 8. 25.>
- ⑥ 삭제 <2020. 8. 25.>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④ (생략)

제34조의2(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사항
8.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관리
- 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6646호, 2022.3.25. 폐지 전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영(0)’으로 설정하였고¹⁴⁾, 온실가스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매년 점검¹⁵⁾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측면이 있음. 현재 동 법률 체계에 따라 2023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¹⁶⁾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각 부처에서는 동 기본계획에 규정된 82개 단위 27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바, 일정 기간 현행 체계를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총리급 기후환경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1.2. (생략)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17. (생략)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⑥ (생략)

17) 체계 및 자구 측면에서는, 부총리급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경우 부총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국무회의),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6조(행정각부) 및 제27조(기획재정부)~제40조(환경부, 개정안은 기후환경부)에서 각 부의 기재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행정안전부는 기후환경 업무는 탄소저감, 미래전략, 경제산업, 재난 대응, 국민인식 변화 등 여러 기능과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바, 단일 부처에서 총괄하는 방안과 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거버넌스 강화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여러 부처가 소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단일 부처의 업무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처 간 업무 영역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는 발생 영역과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대책 수립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기후변화 대응 사무를 단일 부처의 사무로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